

4. 도시계획법중개정법률

법률 제5,898호 1999. 2. 8

개 정 이 유

규제의 실효성이 없거나 국민의 토지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각종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.

주 요 골 자

- 가. 일정한 종류와 규모의 광장·학교·중앙도매시장 등 특정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제한하는 특정시설제한구역은 현재까지 지정사례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(법 제20조).
- 나.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시의 인근지역에 일정한 기준이상의 면적과 요건을 갖춘 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지정사례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으로써, 이와 관련된 조성대지 사업계획승인, 조성대지에 대한 처분계획의 인가, 조성사업의 준공검사 등에 관한 규제를 폐지함(법 제22조, 제54조 내지 제61조).
- 다.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이를 관리할 시행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,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범위안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되어 있으나, 그 중 신·구시설간 기능대체성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함(법 제83조).

※시행일 : 공포후 6월이 경과한날(1999. 8. 9)

도시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중 “도시계획구역 또는 개발예정구역 안의 토지”를 “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”로 하고 “도시계획사업 또는 개발예정구역안의 조성사업”을 “도시계획사업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중 “제22조를 제21조로 한다.

제20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0조의2(공사완료의 공고) ①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, 시가지조성사업등의 도시계획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·도지사(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공사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②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.

③시·도지사는 제2항의 준공검사결과

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검사필증을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공사의 완료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3장제3절(제54조·제57조·제57조의2·제58조 내지 제61조)을 삭제한다.

제66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82조 후단을 삭제한다.

제83조제2항중 “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”를 “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”로 한다.

제85조를 삭제한다.

제86조제1항중 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 및 대통령령으로”를 “대통령령으로”로 한다.

제8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

제90조제1호, 제91조제4호 및 제94조제1호·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